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8-19호

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4호(2008.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및 구역 결정되고, 송파구고시 제2008-54호(2008.9.18.)로 사업시행지구 분할 결정되어, 2009.02.06. 조합설립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-82호(2013.8.16.)로 사업시행인가되어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-40호(2015.4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제2017-117호(2017.8.31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81, 202번지 일원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(정미한 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81, 202번지 일원

나. 면적 : 98,453.7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강신선)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18 (거여동 36-10호 2층)

4. 관리처분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인가일 : 2018년 01월 26일**5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의 요지**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등(변경없음)

▷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(변경)

항목			금액 (변경 전)	금액 (변경 후)	산출근거
보 상 비	거압교회 손실보상비 등 이주보상협의금	손실보상비 등 협의금	-	4,470,180,000	2015.06.08 총회 결의에 따름
		전세보증금 대여	-	1,000,000,000	2015.06.08 총회 결의에 따름/ 추후 반환

항목			금액 (변경 전)	금액 (변경 후)	산출근거
부 대 경 비	기타 경비	기타 예비비	30,914,832,096	25,444,652,096	사업시행과정상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반등에 따른 용역비 등 추가적 비용, 기타 예기치 않은 사업시행에 따른 제비용(추정액), 거압교회 손실보상금 등 제외

※ 총 소요사업비 942, 450, 485, 556원(변경없음)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(변경없음)

▷ 2017년 9월 이후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02-2147-290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